

여 성 가 족 부 주 의 요 구

제 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‘구조지원사업’ 규정
미준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

내 용
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르면 상담소, 지원시설 (현장기능강화사업 포함)는 구조지원사업 추진시 피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‘개별지원 통합카드’에 의료·법률·직업·취업지원 등 피해자가 지원받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 ‘여성인권상담소(경남 창원시)’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의료지원 대상자(1명) 및 법률지원 대상자(6명)의 개별지원 통합카드를 편철하고 있지 않았다.

또한, 편철된 ‘개별지원 통합카드’ 중에는 기재 사항의 일부 내용을 잘못 기재하고 과년도 지원내역(‘13년도 지원대상자 중 ○○○)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

관련 지침에 따라 ‘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’의 규정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